

●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-073호

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2월 6일

산업통상부장관

**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상위법인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(법률 제21154호, '25.12.2. 개정)」에 ‘신기술·신제품 인증’의 용어가 ‘신기술·신제품 지정’으로 개정됨에 따라, 동법 시행령에 사용된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하려는 것임.

**2. 주요내용**

가. 상위법과 용어 일치화를 위해, 해당 조문에 사용된 ‘신기술·신제품 인증’ 관련 용어를 ‘인증’에서 ‘지정’으로 변경(안-제17조, 제18조, 제18조의2, 제18조의3, 제18조의4, 제18조의5, 제19조, 제20조, 제20조의2, 제20조의3, 제20조의4, 제21조, 제22조, 제23조, 제24조, 제25조, 제27조, 제27조의2, 제28조, 제29조, 제5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우)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, 국가기술표준원  
인증산업진흥과
- 전자우편 : [kyungdh@korea.kr](mailto:kyungdh@korea.kr)
- 팩스 : 043-870-5680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(전화 043-870-5502, 팩스 043-870-5680)로 문의하여 주시고,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tir.go.kr> → 예산·법령 → 입법·행정예고 → 입법예고)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